

KS 許可管理

KS 許可制度節次 및 事後管理

- 工業標準化法에 따른 品質表示 (KS) 許可制度 및 節次, 事後管理等에 對하여 관계자료를 취합 整理함.

潤滑油 KS 表示 許可業體協議會
幹事 朴 相 泰

1. 工業標準化的 目的

- 工產品의 品質向上과 生産性向上
- 合理的인 商去來 圖謀

合理的인 工業標準을 制定함으로써 鑛工業製 品의 品質改善과 生産能率의 向上을 期하며 去來의 單純化와 公正化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工業標準化法 第1條)

2. 工業標準의 定義

- 工業標準 : 工業標準化를 위한 基準
- 工業標準化 : 다음 各號의 事項을 統一하고 單純化 하는 것.

- (1) 鑛工業品의 種類, 形狀, 치수(寸數), 構造, 裝備, 品質, 等級, 成分, 性能, 耐久度
- (2) 鑛工業品의 生産方法, 設計方法, 製圖方法, 使用方法, 原單位, 生産에 關한 作業方法 安全條件
- (3) 鑛工業品의 包裝의 種類, 形狀, 치수(寸數), 構造, 性能, 等級, 包裝方法
- (4) 鑛工業品에 關한 試驗, 分析, 鑑定, 檢査, 測定方法
- (5) 鑛工業의 技術에 關한 用語, 略語, 記號, 符號, 標準數 또는 單位
- (6) 構築物 其他 工作物의 設計, 施工方法 또는 安全條件

(工業標準化法 第2條)

3. KS 規格의 分類 및 制·改正節次

가. KS 規格別 分類

○ 外形上의 모양이나 치수, 材料의 成分, 製 品의 性能, 設計過程, 製造工程 檢査, 包裝,

○ KS 規格 分類

部 門	分類記號	部 門	分類記號
基 本	A	織 維	K
機 械	B	窯 業	L
電 氣	C(절연유)	化 學	M(윤활유)
金 屬	D	醫 療	P
鑛 山	E	輸送機械	R
土 建	F	造 船	V
日 用 品	G	航 空	W
食 料 品	H		

○ 潤滑油 KS 許可 現況

品 名	記 號	會社名
내연기관용 윤활유	KSM. 2121	10
기 계 유	KSM. 2126	7
기 어 유	KSM. 2127	8
절 삭 유	KSM. 2173	5
냉동기유	KSM. 2128	4
그리이스	KSM. 2130	3
경질구리이스	KSM. 2133	3
절 연 유	KSC. 2301	4

表現方法 등 鑛工業製品의 生産에 關聯되는 모든 分野에 關한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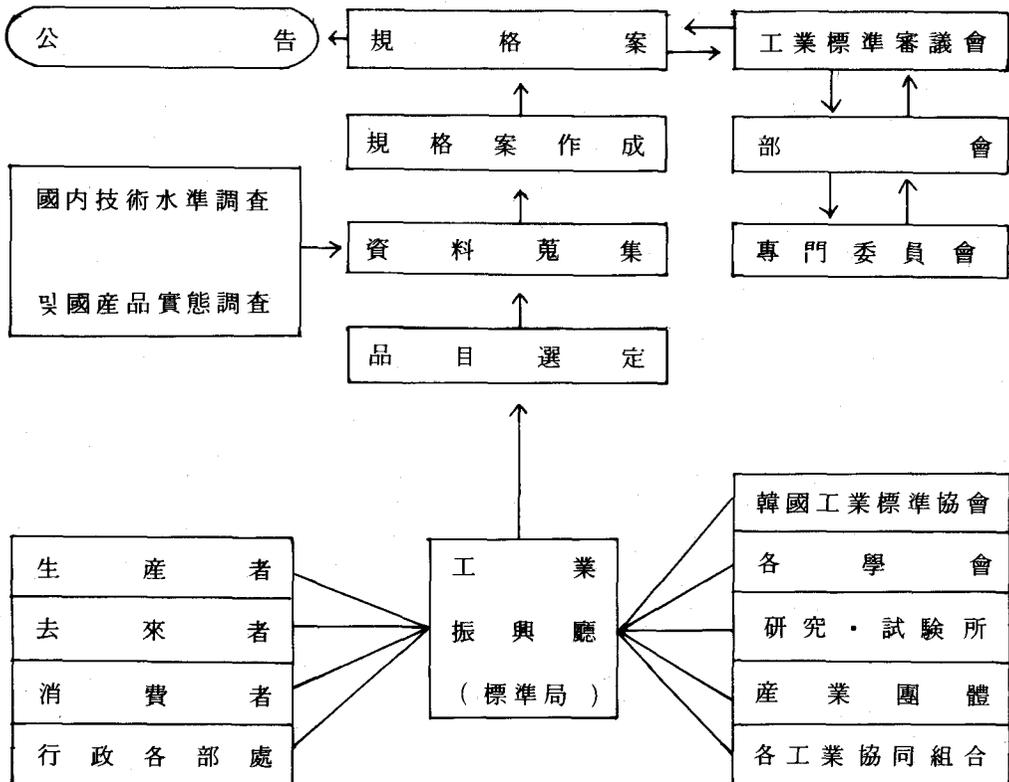
- 製品規格：製品이 直接지녀야할 品質性能 등에 關한 規格
- 方法規格：設計, 生産, 試驗, 檢査方法 등 各種 方法에 關한 規格
- 傳達規格：用語, 略語, 記號 등 各種表現에 關한 規格

나. KS 規格의 制定 및 改正節次

- 制定主體：工業振興廳長
- 制定事由
 - 政府의 必要
 - 利害關係人(個人 또는 法人)의 申請
- 申請節次
 - 別途定하는 書式에 다음 書類를 添附하여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
 - 規格式에 대한 說明書(規格의 改正 또는 廢止를 위한 說明書)
 - 公認된 學會, 研究所 또는 試驗檢査所의 檢討意見書

(法第8條·法第25條施行規則第2條)

○制定節次



4. KS 表示許可制度

가. 概要

- 工業規格의 普及 活用으로서 消費者를 保護
- 政府가 品質保護機關이 되어 特定商品이 韓國工業規格에 該當함을 認證
 - 特定商品이 韓國工業規格에 該當하고 있다는 表示가 消費者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時 工業振興廳長은 表示許可對象으로 指定
 - 表示品生産者가 自己製品에 韓國工業規格에 該當함을 表示하고 싶을 때 表示許可申請
 - 工業振興廳長은 生産條件과 品質狀態를 檢査後 表示許可
 - 生産者는 表示할 수 있는 特權과 品質保證에 必要한 技術的 生産條件을 維持할 社會的 國家的 責任을 負擔

나. 許可對象

○工業振興廳長이 表示 指定한 品目

製 品	(1)品質識別이 容易하지 아니한 品目으로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品目
	(2)原資材에 該當하는 品目으로 다른 工業에 影響을 미치는 品目
	(3)獨寡占品目 또는 價格變動으로 顯著한 品質低下의 憂慮가 있는 品目
加工 技術	(1)加工技術이 規格에 定하여진 技術水準에 到達한 것인 때
	(2)加工技術을 使用하므로써 品質向上이 可能한 것일 때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第4條)

○潤滑油 관련 指定 品目

해당규격번호	규격명	해당규격번호	규격명
KSM. 2121	내연기관용윤활유	KSM. 2173	절삭유계
KSM. 2130	그리스	KSM. 2126	기계유
KSM. 2134(9)	경질 그리스	KSM. 2127	기어유
KSM. 2128	냉동기유	KSM. 2142	부동액
KSM. 2141	브레이크액	KSM. 2301	절연유

다. 表示許可申請

別途의 定하는 書式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

- (1)生産業體의 製造設備 및 檢査設備의 目錄 또는 加工設備 및 檢査設備 目錄
 - (2)檢査方法 및 品質管理方法을 記載한 書類
-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第6條)

- ※ 1. 必要한 境遇 申請書類補完 指示(10日間)
- 2. 補完期間超過時 申請을 拋棄로 看做
- 3. 工場審査日字를 事前 通報
- 4. 工場檢査以前에는 撤回 可能

라. 許可要件

(1)規格製品 生産을 爲한 社內標準化體制의 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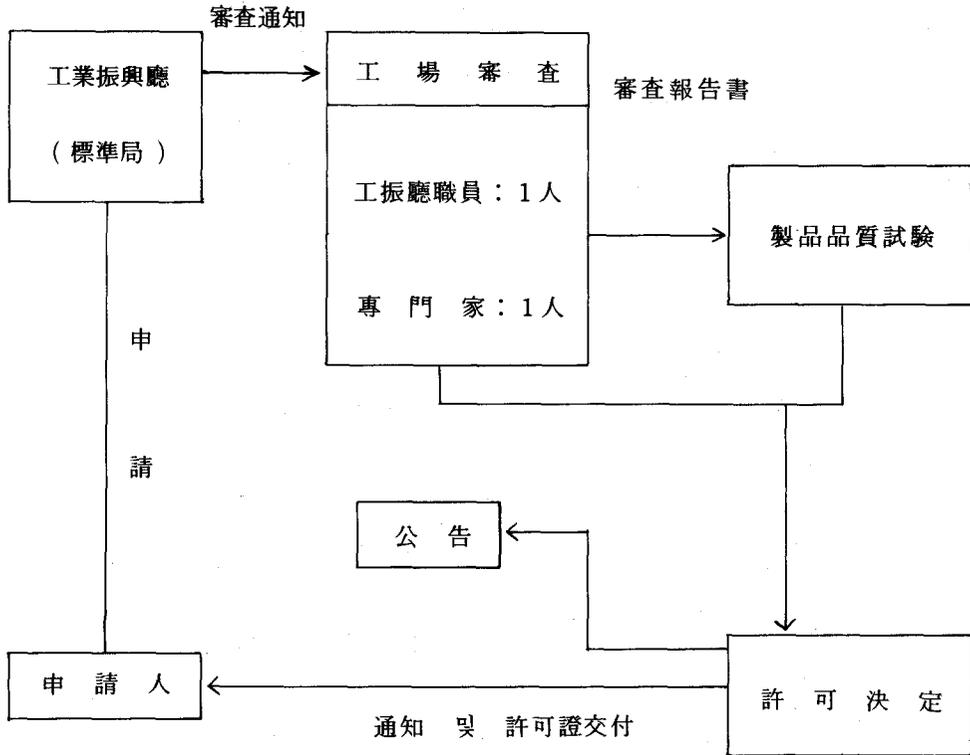
審査項目	審査內容
(a) 標準化一般	
① 經營幹部의 社內標準化와 品質管理에 대한 熱意	① 經營幹部(法人의 경우 理事級 이상, 個人의 경우 代表者 및 各部門의 責任者)全體가 外部機關에서 實施하는 標準化 및 品質管理教育을 履修한 實績이 있는지 與否

審査項目	審査內容
	② 最高經營者와 各部門의 一部 責任者간 社內標準化 및 品質管理 教育實績이 있는지 與否
② 社內標準化와 品質管理에 대한 教育訓練程度	① 部門別, 階層別로 教育體制가 確立되어 있고 計劃에 依據 全幹部가 外部教育을 위한 履修한 實績이 있는지 與否 ② 社內標準化 및 品質管理 教育을 全社의 으로 實施하고 있는지 與否 ③ 外部教育을 履修한 技術幹部가 自體教育을 實施한 實績이 있는지 與否
③ 社內標準化를 爲한 品質管理의 組織의 人 運營	① 關係 各部門間 職務가 明確하고 相互 有機的인 協力體制를 이루기 위하여 委員會等을 構成, 運營하고 있는지 與否 ② 檢査 業務가 獨立性을 維持하고 있는지 與否 ③ 社內標準化 및 品質管理가 生産部署爲 主로 實施되고 있는지 與否
④ 品質管理擔當者	① 1年以上 在職한 品質管理擔當者가 品質管理業務를 推進하고 있는지 與否 ② 品質管理 擔當者가 品質管理 業務를 推進하고 있는지 與否 ③ 自體設計 能力은 不足하나 製品에 대한 品質水準을 把握하고 있는지 與否
⑤ 社內標準化 및 品質管理	① 社內規格에 該當 審査基準內容 및 社會 運營에 必要한 規定이 있고 이를 活用하는지 與否 ② 社內規格이 社會 實情에 適合하게 規定되고 所管分野에서 熟知, 活用하는지 與否 ③ 全社의 으로 社內標準化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推進되고 있는지 與否 ④ 社內規格이 該當 審査基準의 內容에 關하여 作成되고 이를 熟知하고 있는지 與否
⑥ 不滿處理 및 로트 추적	① 不滿處理를 위해 市場情報 및 潛在 不滿事項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工程 또는 製品에 반영하고 있는지 與否 ② 規定에 依據 로트 추적이 可能한지 與否 ③ 不滿處理 規定이 있으며 로트추적이 主로 不滿發生時 이루어지고 있는지 與否
(b) 資材의 管理	受人資材에 對한 品目別 檢査基準· 方法 等の 適合性 與否
(c) 工程管理	製品工程別 作業 및 檢査方法의 適合性 與否
(d) 製品의 品質	製品의 品質에 對한 社內規格, 品質檢査 方法 等の 適合性 與否
(e) 製造設備	審査基準에 列擧된 設備의 有無, 管理狀態 等
(f) 檢査設備	審査基準에 列擧된 設備의 有無, 校正檢査 與否 等

(2) 生産製品(試料)의 外部專門機關의 品質試驗 合格

- 國立工業試驗院
- 地方 工業試驗所
- 其他 工產品 試驗檢査所 및 機械研究所 等

마. 許可節次



바. 表示品에 대한 異議申請

表示品이 그 規格에 該當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할 때 다음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에 表示品을 添附하여 道知事에게 提出

- 申請人의 住所 姓名
- 表示品의 名稱 또는 種類
- 表示品의 工場名

- 表示品의 販賣場所 및 販賣人
- 申請事由

사. 許可業體의 業務事項

(1) 表示品 宣傳

- 表示品 生産後 可能
- 表示品可番號, 規格名稱 番號 및 種類와 號稱을 明示
- 非表示品과 同時 宣傳時 表示品으로 誤認되지 않아야 함.
- 表示許可部品 使用 製品을 表示品으로 宣傳 不可
- 表示品 宣傳時 表示圖表는 規定된 圖表를 使用

(施行規則第12條)

(2) 教育訓練

- 代表者: 表示許可後 3年 經過時 또는 代表者 變更時

※ 未畢時, 工場檢査實施

(令第33條의4, 運營要綱第26條의 2)

- 品質管理技士: 登錄 또는 登錄更新後 5年 以內

(國家技術資格法視行令第12條의 3)

(3) 文書의 備置 및 報告

(가) 文書의 備置

- 表示品의 製品設備 및 檢査設備의 管理臺帳 및 管理記錄
- 檢査方法 및 品質管理方法 其他 品質保證,

에 必要한 管理方法을 規定한 文書와 그 實施記錄

- 表示品の 生産 및 販賣臺帳
(施行規則第15條)

(나) 報 告

- 品質管理擔當者의 指定報告：1個月 以內에 道知事에게 報告

○生産報告

-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表示品の 寫眞을 添付, 別途定한 書式에 依한 生産計劃을 道知事에게 報告
- 表示品 生産狀況을 上下半期別로 別途定한 書式에 依하여 半期開始後 15日 以內에 道知事에게 報告
- 表示品 生産中斷(期間 3個月 以上)時 別途定한 書式에 依하여 遲滯없이 道知事에게 報告

(施行規則 第12條)

○生産條件變更報告

- 表示品 生産條件變更時
 - 工場移轉時
 - 生産施設의 擴張 또는 縮小時
 - 主要原資材의 變更時
 - 工場의 讓渡 또는 合併時
- 遲滯없이 別途 定한 書式에 依하여 道知事에게 報告(施行規則第14條, 第20條, 第22條)

○規格改正後

- 公告日로부터 3個月 以內 生産하되 遲滯없이 工業振興廳長에게 報告
- 期間內에 表示品 生産不可能時 미리 工業振興廳長에게 報告(施行規則 第18條)

○許可證更新

- 記載事項變更時 事由書 添付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
(施行規則 第23條)

○許可證의 廢止, 許可의 取消 또는 廢業時 工業振興廳長에게 返納
(施行規則 第19條)

○品質管理擔當者 指定

- 許可申請時 品質管理擔當者指定
(法第23條의 2)

가. 概 要

- 工業標準化 促進을 위하여 政府機關 및 公共機關은 鑛工業品 購入時 KS表示品을 優先 購買토록 하고 KS表示品 使用義務化도 實施

(工業標準化法 第22條의 3)

- KS表示品에 對하여는 다음의 檢査 또는 形式承認을 免除

- (1) 工業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
- (2)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檢査
- (3)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 (4)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工業標準化法 第22條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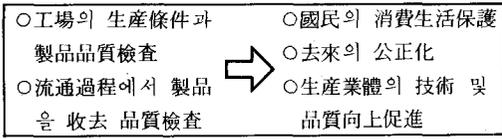
나.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優先購買制度

法規 또는 施行令	制 度 의 內 容
工業標準化法 第22條의 3 (71. 1. 22)	(表示品の 優先購買)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公共團體 및 韓國產業銀行의 出資企業體 管理에 關한 法律 第1條에 規定한 出資企業體는 物品을 購買하고 자 할 때에는 第15條 第1項 및 第15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品을 優先的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109條 (84. 4. 1)	(指名競爭에 의한 境遇) ① 各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에 列擧한 境遇에는 指名競爭에 붙일 수 있다. 7. 工業標準化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가 許可된 工業規格 表示物品 또는 工產品 品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이 査定된 物品을 製造하거나 買入할 때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112條 (85. 4. 1)	(隨意契約에 의한 境遇) ① 各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에 列擧한 境遇에 있어서는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21. 工業標準化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許可된 工業規格 表示物品 또는 工產品 品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이 査定된 製品으로서 當該物品에 對한 工業規格 表示許可 또는 等級査定를 받은 生産者가 1人뿐인 境遇에 그 生産者로 하여금 製造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買入할 때
國務總理指示 第38號 (81. 10. 21)	○調達廳長 및 各級 機關長은 工業標準化法 第22條의 3 및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112條에 의거 KS 表示品을 優先 購買 使用할 것.

5. KS 表示許可業體에 대한 支援制度

6. KS許可工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

가. 概要



- KS許可工場은 一定한 基準에 依據 生産條件 및 製品의 品質을 檢査한 結果 繼續 KS 規格水準以上の 製品을 生産할 수 있다고 國家가 이를 認定하여 KS表示品에 대한 優先購買, 檢査 및 型式承認을 免除
- 許可工場은 自己責任아래 KS表示製品을 生産하되 KS規格水準以上の 優秀製品만을 生産할 社會的 國家的 義務를 負擔
- 國家는 許可工場이 恒常 KS規格水準以上の 製品을 生産하는지 與否를 確認하고 不良品 生産流通을 防止하여 消費者를 保護하고 生産工場의 品質向上을 促進

나. 事後管理方法

(1) 市販品調査

- 流通過程에서 規格表示品の 品質水準 維持와 消費者保護를 위해 必要時 販賣되고 있는 規格表示品の 品質을 試驗

〈工業標準化法第20條2〉

- KS表示許可業體協議會를 構成하여 市販品 調査를 自率的으로 實施할 경우 다음사항을 면제

- 시판품 조사 및 공장검사

第27條의 3 (事後管理 免除) ① 工業標準化의 擴散을 促進하기 위하여 工業標準化 實施狀態가 優秀한 許可工場에 授與하는 工業標準化賞을 受賞한 業體에 對하여는 다음에 依據 一定期間 事後管理(法 第20條의 2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와 施行令 第33條의 3 第1項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檢査에 한함)를 免除한다. ② 第26條의 3 規定에 의하여 構成된 品目別 KS業體 協議會中 自率적인 事後管理 等 運營實態가 優秀한 品目別 協議會에 對하여 工業振興廳長은 該當 協議會에 對한 事後管理 (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한 시판품조사와 공장검사에 한함)를 一定期間 免除할 수 있다.

③ KS 표시허가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준화 능력평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평가결과가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 (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1항에 의한 시판품조사와 공장검사에 한함)를 면제할 수 있다.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運營要綱〉

第27條의 2 (事後管理 計劃樹立) ① 道知事는 許可工場에 對한 法 第20條의 2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와 施行令 第33條의 3 規定에 의한 工場檢査를 實施함에 있어 每年 다음과 같이 定期 또는 隨時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定期：2回(上下半期)

隨時：必要時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 計劃을 樹立하는데 지침이 되는 事項을 工業振興廳長은 每年 道知事에게 示達할 수 있다(條新設85. 11. 30 工業振興廳 告示 第85-1963號).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運營要綱〉

第20條의 2 (市販品調査) 工業振興廳長은 流通過程에서의 規格表示品の 品質水準維持와 消費者보호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販賣되고 있는 規格表示品の 品質에 관한 試驗(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77. 12. 31 法3068)

〈工業標準化法〉

(2) 工場檢査

- 規格表示에 對한 異議申請, KS表示承認후 6個月이 經過될 때 등

第33條의 3 (檢査) ① 法 第20條 第1項(法 第15條의 3 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改正 83. 4. 12 大統領令 11097호)

1. 法 第19條(法 第15條의 3 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
2. 法 第20條의 2 規定에 의한 市販品 調査結果 그 規格表示品이 規格에 未達된 때
3. 法 第15條 第1項 또는 法 第15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의 許可를 받거나 法 第15條의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表示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6個月이 經

過된 때

4. 工場의 移轉, 生産施設 擴張 또는 規格의 改正으로 인하여 生産條件이 變更될 때

5. 第1號 내지 第4號以外 工業振興廳長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② 第1項의 檢査는 第2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의 審査基準에 準하여 實施한다. (改正 83. 4. 12 大統領令 11097호)

〈工業標準化法施行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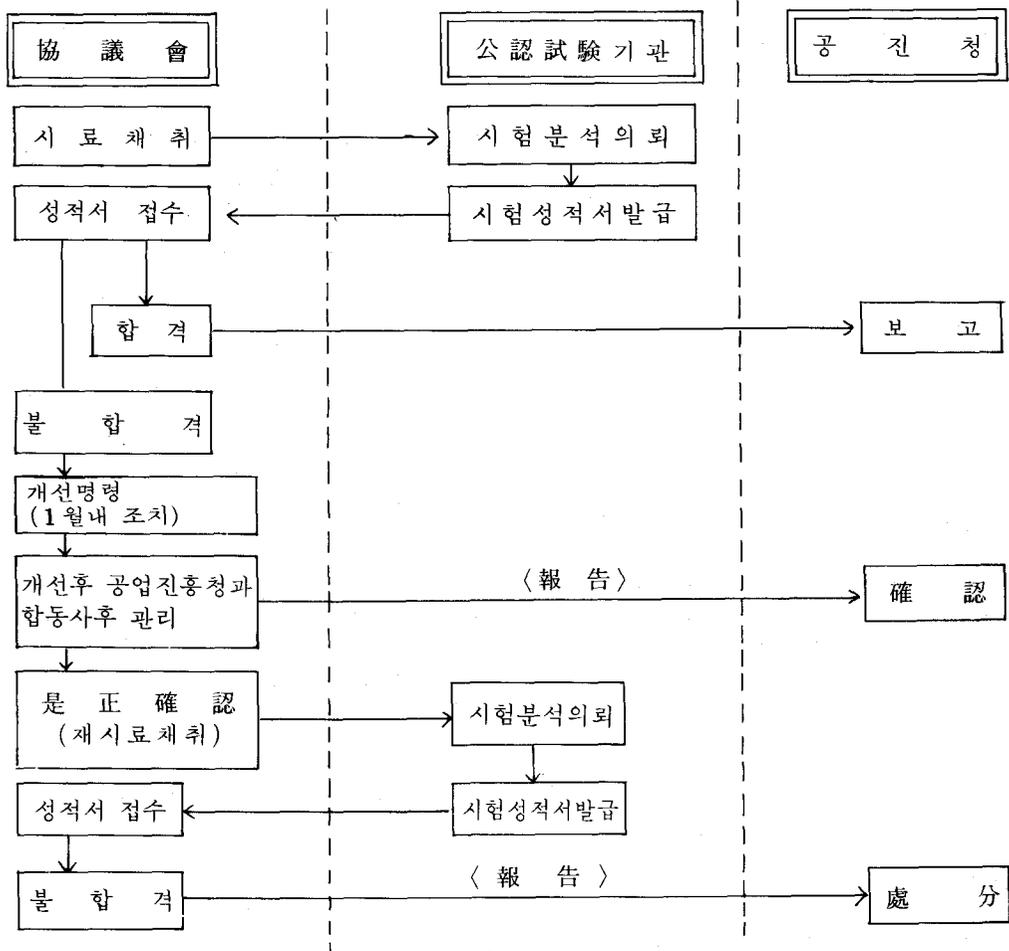
(3) KS 업체 協議會 事後管理 要領

1) 基本方向(정부)

○자율적인 구성 및 運營의 내실화 유도

- 품질감시기능 품질감시기능
- 사후봉사기능
- 정보교환 및 시설공동활용등

3) 處理흐름도



○사후관리의 효율적 실시

- 사회적 신뢰성 결여시는 직접 행정기관의 사후관리로 전환

2) 事後管理 細部要領

品目別 協議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會員業體에 對한 自率의인 事後管理(市販品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연간 2회이상 시판품 조사 원칙

- 공장수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최초 사후관리시 지적되면 자체시정 명령 후 시정여부 확인(공진청과 합동조사)

○시정여부 확인결과 재차 지적되면 행정처분

○협의회 관장 품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후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에 특별사후관리 의뢰

4) 潤滑油 KS 協議會 現況

○設立日: 86. 8. 25

○會員社 및 KS 表示 獲得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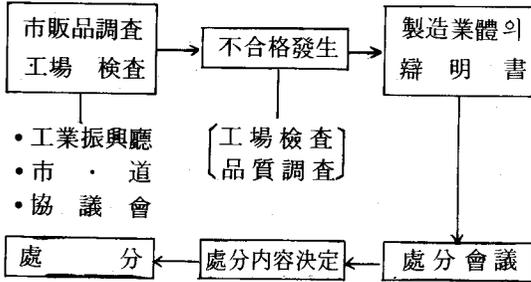
KS No.	유 용 도		업체명	종	업	명	(주) 유 공	호남정유	극동정유	모빌코리아	미진석유	천미광유	한일정유	한국하우톤	제일유화	변우화학	임성반도	대성정유	이수화학	천대정유	동호물산	성원산업	삼성정유			
																								유	종	
KSM 2121	내연기관용	육상	1	종				○	○	○	○	○	○													
			2	종	○	○	○	○	○	○	○	○	○	○					○		○		○	○		
			3	종	○	○	○	○	○	○	○	○	○	○					○		○		○	○		
	윤활유	선박	1	종								○	○													
			2	종	○	○	○	○	○	○	○	○	○													
			3	종	○	○	○	○	○	○	○	○	○							○						
			4	종	○	○	○	○	○			○														
KSM 2126		기계유					○	○	○	○	○	○									○					
KSM 2127	기어유	공업용	1	종	○				○	○	○															
			2	종	○	○	○	○				○														
KSM 2128	냉동기유	자동차용	1	종									○													
			2	종	○															○						
KSM 2173	절삭유제	비수용성	1	종	○									○		○	○					○				
			2	종	○										○		○	○					○			
		수용성	W1	종	○										○		○	○					○			
			W2	종											○		○	○								
KSM 2130	그리스	일반용	1	종				○				○			○											
			2	종								○				○										
		구름베어링용	1	종					○				○			○										
			2	종					○				○			○										
			3	종									○			○										
		자동차용세척제	1	종																						
	1		종																							
	집중유용	1	종																							
		2	종																							
		3	종																							
4		종																								
고하중용기판유	1	종																								
	1	종						○			○				○											
KSM 2134		경질그리스										○			○											
KSM 2170	열처리용유	1	종												○											
		2	종												○											
		3	종												○											

다. 事後管理 結果에 따른 處分

(1) 處分會議運營

- 事後 管理結果 不合格 內容에 대한 處分의 同一性 및 均衡維持
- 不利益 處分에 대한 公正性 및 慎重性을 圖謀하기 위한 合議制

(節次)



(2) 處分內容

注意警告	이 境遇 對象業體는 1個月以內에 是正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가. 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工場 検査結果 表示 許可 審査基準에 定한 審査項目의 管理實績이 未備하여 規格違反이 發生할 憂慮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短期間內에 그 補完이 可能하다고 認定될 때 나. 規格違反 事項이 경미하여 使用上 支障이 없다고 判斷될 때 다. 品質管理 擔當者를 指定하지 않았을 때 라. 工業振興廳長 또는 道知事가 要請한 報告 및 規則에 定한 各種文書의 備置, 및 報告를 하지 않거나 虛偽로 作成, 報告한 때
表示變更	이 境遇 對象業體는 1個月以內에 措置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가. 規格違反 事項이 製品의 種類 또는 等級을 變更함으로써 是正이 可能할 때

表示停止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될 때에는 3 個月 동안 表示를 停止한다. 가. 주의 警告나 表示變更의 處分을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是正하지 않았을 때 나. 規格違反 事項이 品質을 低下시켜 消費者에게 損失을 준다고 認定되었을 때
販賣停止	規格에 違反된 製品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 製造業者로 하여금 當該 製品을 回收하여 流通되지 않도록 處分할 수 있다. 가. KS 表示 命令 品目으로서 規格違反 事項이 品質을 低下시켜 人命의 被害나 火災의 發生等 公共의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거나 消費者에게 損失을 준다고 認定될 때 (注意 警告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是正하지 않았을 때를 包含한다): 期間은 3 個月로 한다. 나. KS 表示의 除去가 技術的으로 매우 困難한 때 : 期間은 表示除去處分의 內容에 따른다.
許可取消	가. 表示停止, 販賣停止 또는 表示除去處分을 違反하였거나 正當한 事由없이 是正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同一規格 品目에 對하여 表示停止 또는 販賣停止 表示除去 處分을 받았던 許可工場이 處分日字 以後 1年以內에 다시 表示停止, 販賣停止 또는 表示除去 處分의 事由에 該當되게 된 때 다. 規格違反 製品에 使用된 資材, 施設, 裝備 또는 工程等으로 보아 規格違反 事實을 生産者가 製品生産 以前에 미리 알고 있었음이 客觀的으로 認定될 때
市販品 表示除去	表示停止, 販賣停止 또는 許可取消의 境遇에는 그 製造業者로 하여금 이미 流通中인 市販品에 대한 表示의 除去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라. 罰 則

1年以內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 非 KS 業體가 KS 表示를 한 境遇 ○ KS 表示命令品目的 경우, 非 KS 業體가 이를 製造하거나 販賣한 경우 ○ 鑛工業品의 統一 單純化命令에 違反한 경우 ○ 事後管理結果에 따른 處分에 違反한 者
50萬원 以下의 罰金	○ 文書의 虛偽作成, 未備置 ○ 所定의 報告를 하지 않거나 虛偽報告를 한 者 ○ 工場 検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